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50
----------	------

2023년 09월 0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라. 상정일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23.5.9.)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회와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면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면의결 대상(안 제8조 제2항)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3항)
 -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대면과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제외 법령)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협의완료(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6.15. ~ 7.5.):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안 제8조제2항), 원격영상회의 운영(안 제8조제3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51호, 일부개정 2023.5.9., 시행 2023.11.10.)의 개정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도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51호, 일부개정 2023.5.9., 시행 2023.11.10.)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

-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9.>
- ⑥ 제5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9.>

- 이는 상위법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대상(안 제8조제2항)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 위원회 회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서면의결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그 사유를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위원회 회의 서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안 제8조제2항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 회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신 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제2항은 단서에서 위원회 세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 의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 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 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u>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u> < 신 설 > < 신 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u>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u>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u>

< 신 설 >	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 려운 경우
---------	--

2) 원격영상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안 제8조제3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는 물리적으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전용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가 증가하였음. 영상회의는 이동 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는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5항)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신 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 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할 수 있다.

- 또한, 2022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총 41번 회의 중 27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총 25번 회의 중 11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는바, 현재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중 일부는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서 규정으로 현행화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내역(2022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

〈 2022년 〉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1	26차	회의실	4건	15	40차	회의실	6건	29	54차	화상	2
2	27차	회의실	5건	16	41차	화상	5건	30	55차	화상	8
3	28차	화상	2건	17	42차	회의실	7건	31	56차	회의실	6
4	29차	화상	3건	18	43차	회의실	8건	32	57차	회의실	7
5	30차	화상	3건	19	44차	화상	6건	33	58차	화상	1
6	31차	화상	5건	20	45차	회의실	5건	34	59차	화상	4
7	32차	화상	2건	21	46차	화상	7건	35	60차	화상	1
8	33차	화상	5건	22	47차	화상	2건	36	61차	회의실	10
9	34차	화상	9건	23	48차	회의실	4건	37	62차	화상	1
10	35차	화상	4건	24	49차	화상	5건	38	63차	회의실	7
11	36차	화상	8건	25	50차	화상	1건	39	64차	회의실	6
12	37차	화상	2건	26	51차	화상	3건	40	65차	회의실	7
13	38차	화상	4건	27	52차	화상	9건	41	66차	화상	4
14	39차	회의실	6건	28	53차	화상	6건				
〈 2023년 7월 31일까지 〉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연번	회의	회의 장소	의결 안건
1	67차	회의실	6	10	76차	화상	4	19	85차	회의실	5
2	68차	회의실	2	11	77차	회의실	4	20	86차	화상	6
3	69차	화상	3	12	78차	화상	4	21	87차	회의실	5
4	70차	화상	2	13	79차	회의실	4	22	88차	회의실	8
5	71차	회의실	11	14	80차	화상	6	23	89차	회의실	4

6	72차	화상	4	15	81차	회의실	7	24	90차	회의실	5
7	73차	화상	2	16	82차	회의실	5	25	91차	화상	7
8	74차	화상	1	17	83차	화상	5				
9	75차	회의실	8	18	84차	회의실	3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8월 25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 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위원장 1명,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는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으로 언제나 대면 참석이 가능 하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모든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모든 위원이 대면으로 참석하는 회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원격영상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바,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부칙으로 시행일 규정

- 안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일이 2023년 11월 10일로 하고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2023년 11월 10일로 하여 대통령령과 시행일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확보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의를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회 세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안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50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6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안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